

건축주 직영공사 축소

2018년 6월 27일 부터 시행

건축 용도	건축규모와 직영가능 여부
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	규모 상관없이 건설면허 필요
상기 외 일반상가, 근생건물, 단독주택(1가구), 상가주택	연면적 200㎡(60.5평) 초과시 건설면허 필요 연면적 200㎡(60.5평) 이하시 건축주직영 가능